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 colspan="2"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341p</td><td rowspan="3">오타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<table>
<tr><th>종합소득 과세표준</th><th>세 율</th></tr>
<tr><td>1,400만원 이하</td><td>과세표준의 6%</td></tr>
<tr><td>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</td><td>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</td></tr>
<tr><td>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</td><td>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</td></tr>
<tr><td>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</td><td>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</td></tr>
<tr><td>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</td><td>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</td></tr>
<tr><td>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</td><td>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</td><td>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</td></tr>
<tr><td>10억원 초과</td><td>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<table>
<tr><th>종합소득 과세표준</th><th>세 율</th></tr>
<tr><td>1,400만원 이하</td><td>과세표준의 6%</td></tr>
<tr><td>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</td><td>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</td></tr>
<tr><td>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</td><td>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</td></tr>
<tr><td>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</td><td>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</td></tr>
<tr><td>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</td><td>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</td></tr>
<tr><td>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</td><td>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</td><td>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</td></tr>
<tr><td>10억원 초과</td><td>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사유</td><td colspan="2">숫자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347p
[㉡ 공제 가능 의료비] 중</td><td rowspan="3">개념,공식-설명</td><td>수정 전</td><td colspan="2">ⓖ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</td></tr>
<tr><td>수정 후</td><td colspan="2">ⓖ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</td></tr>
<tr><td>수정사유</td><td colspan="2">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5 제1항 제7호 개정 [2024년 2월 29일]</td></tr>
</table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